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적 송달〉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94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운영 ..... | 2 |
| 2. 전자적 송달 .....            | 6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 의안번호 : 169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49조의3)

개정안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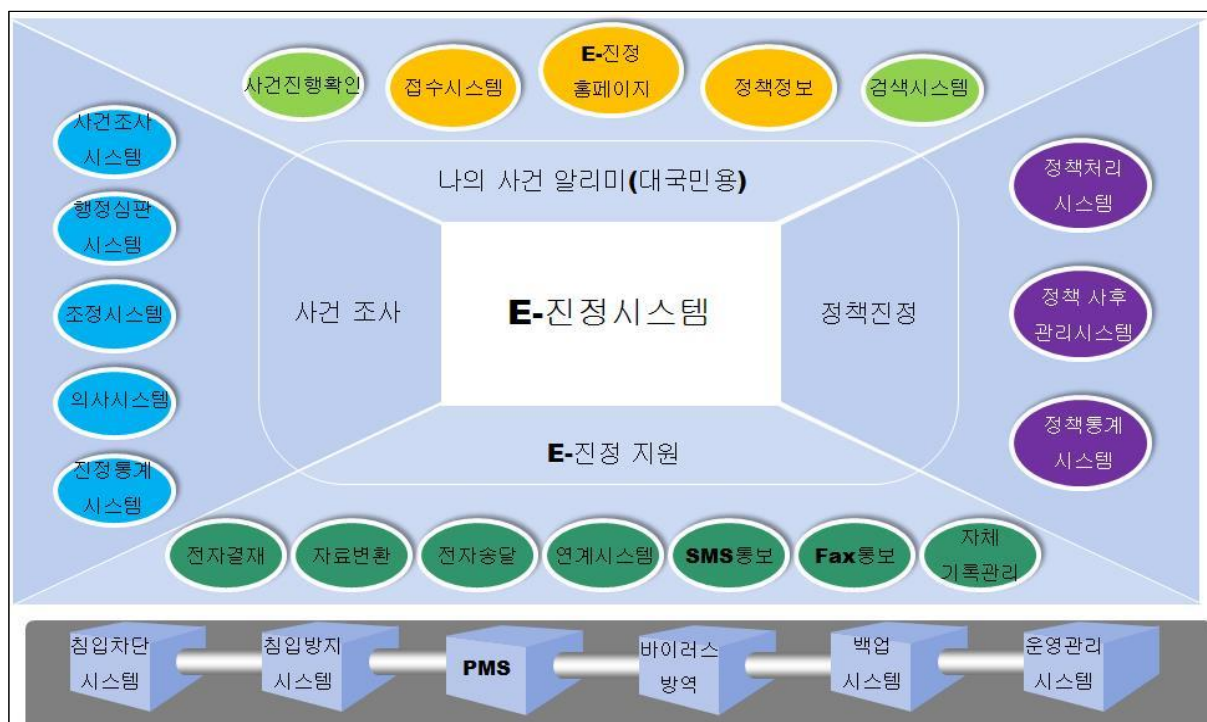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1)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정사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2019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sup>2)</sup> 해당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조사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e-진정시스템’과 진정을 제기한 사람 등이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 진행 과정을 단계별(13단계)<sup>3)</sup>로 확인할 수 있는 ‘인권e’로 구성되어 있음.

[표-2]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기능 개념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제안(2018년 4월)에 따라, 종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사용되던 진정처리시스템 상의 사건 진행 경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2019년에 개선했.

3) 진정접수-사건배정-조사관배정-진설서 및 자료제출요구-당사자 및 관계인조사-현장조사-사전자료검토-결과보고서작성-안전상정-심의의결-결정문작성-조사종결(결정통지)-권고이행결과

한편, 사법기능 또는 준사법기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행정심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표-3]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입법례

| 구 분                             | 정보시스템     | 내용 또는 목적                                                                                               |
|---------------------------------|-----------|--------------------------------------------------------------------------------------------------------|
| 「헌법재판소법」 §76                    | 전자정보처리조직  |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 또는 관리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체계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의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 |
| 「행정심판법」 §52                     | 전자정보처리조직  |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
|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의2               | 통합정보시스템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의 관리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6               | 감사정보시스템   | 감사 관련 지식·경험의 공유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                                                        |

개정안은 진정한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 조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구축 목적, 실제 운영 상황,<sup>4)</sup>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과 유사한 시스템의 운영 사례 등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sup>5)</sup>

---

4)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내부업무시스템인 ‘e-진정시스템’은 조사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사용 중이고, 대국민사이트 ‘인권e’는 연간 약 30만명의 국민이 이용 중임.

5)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자적 송달의 안정적 운영 및 효력의 명확화 등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 전자적 송달 (안 제49조의4)

개정안은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p> <p>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진정 처리 관련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 업무를 주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가 분실·훼손되는 사례<sup>6)</sup>가 발생하여 진정인 등이 그 내용을 적시에 확인·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송달 여부 및 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에 비용도 소요되고 있음.

[표-5]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위원회 규칙상 주요 송달·통지 예시<sup>7)</sup>

| 근거            | 내용                                        |
|---------------|-------------------------------------------|
| 법 제32조제4항     | 진정 각하 또는 이송 시 지체 없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 |
| 법 제33조제3항     | 다른 구제 절차로 이송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       |
| 법 제39조제2항     | 진정 기각 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 및 이유 통지                |
| 법 제42조제5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       |
| 법 제44조        | 피진정인, 소속기관등의 장 등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
| 법 제45조        | 소속기관등의 장에 대한 징계 권고                        |
| 법 제46조제1항     |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조사규제규칙 제4조제2항 | 사건처리기한 연장 시 문서로 진정인에게 설명                  |
| 조사규제규칙 제48조   | 직권조사 심의·의결 시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처리결과 통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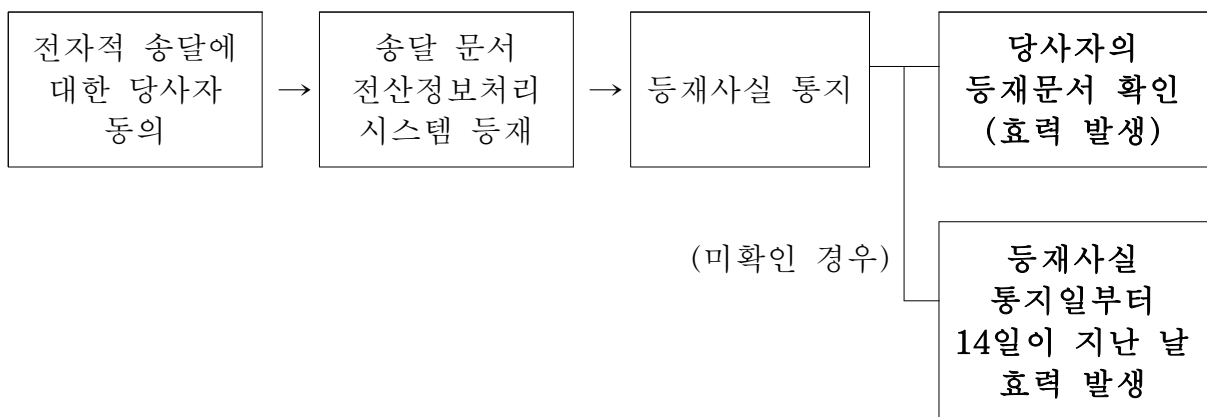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6) 주거지를 이동한 진정인이 우편으로 발송된 사건처리통지서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 등

7) 참고로, 진정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경우에는 불복 시 당사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에 개정안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송달 및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근거, 방법·절차, 효력 및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6] 개정안에 따른 전자적 송달의 절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자적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를 원칙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가 그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진정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진정한 및 피진정한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심판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sup>8)</sup>

8)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심판법」 상 전자적 송달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관계인 등의 동의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음.

[표-7] 전자적 송달 효력 발생 시점 관련 유사 입법례

| 구 분                              | 전자적 송달 효력 발생 시점                                                                                                                                                                                              |
|----------------------------------|--------------------------------------------------------------------------------------------------------------------------------------------------------------------------------------------------------------|
| 「헌법재판소법」 §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확인</u>한 때</li> <li>○ 다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1주</u>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1주</u>가 지난 날</li> </ul>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u>확인</u>한 때</li> <li>○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1주</u>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1주</u>가 지난 날</li> </ul>                                      |
| 「행정심판법」 §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인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u>확인</u>한 때</li> <li>○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2주</u>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u>2주</u>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li> </ul>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된 송달·통지 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게 되면,

진정인 등의 진정사건 절차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진정사건 처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편 발송 문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송달·통지 사실의 입증문제를 예방하며,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